

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

사 건 2000년 금 제 호

공 탁 자 이 이 (00000-00000)

주 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번지

피공탁자 🔷 🔷

주 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번지

귀원의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의 형사사 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(단, 기소유예는 제외)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.

형 사 사 건 의 표 시

1. 사 건 번 호 : ㅇㅇ 경찰서 20ㅇㅇ년ㅇㅇㅇ호

○○ 지방검찰청 20○○년 형제○○○호

○○ 지방법원 20○○년 고단(합)○○○호

1. 사 건 명 : 예)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1. 피의자(피고인): ○ ○ ○

주민등록번호: 00000-00000

2000. 0. 0.

신고인 (공탁자) ○ ○ ○ ②

ㅇㅇ지방법원 공탁관 귀중

공탁 2000년 금 제 호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접수된 서면임을 확인함.

○○지방법원 공탁관

(Q)